

임원선출규정

1998년 9월 19일 제정
2010년 1월 30일 개정

第1條 本 規程은 대한국제법학회(이하 본학회라 칭한다)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第2條 제1조의 임원은 회장, 차기회장, 감사 및 일반이사를 말한다.

第3條 매년 총회일 1년 전에 가입하고 본 학회의 회비를 완납한 일반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. 여기서 일반회원이라 함은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회원을 제외한 회원을 말한다.

第4條 ① 직무이사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일반회원명부를 총회 30일 이전에 일반회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소정기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.

第5條 선거직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.

① 회장, 차기회장 및 감사
선거일 현재까지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

② 일반이사
선거일 현재까지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

第6條 선출방식, 투표방법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附 則

본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附 則

본 규정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